

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18. 12. 31.>

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서
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법인 또는 기관명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
상호	영업의 종류		
제조공장(영업소) 소재지			
수입상대방			
제품명			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36조의2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허가의 경우	1.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(평면도를 포함합니다) 2. 제조공정설명서 3.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	수수료 없음
	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의 경우	1. 사업계획서(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2. 보관시설 명세서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²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